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50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종욱·최은석·김예지

송언석 • 박수영 • 김소희

김상훈 • 이성권 • 이종배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 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 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1천만원에"를 각각 "2천만원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	l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	1
에 대해서는 <u>5천만원</u>	<u>5억원</u>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2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	
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	<u>2</u>
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u>천만원에</u>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	4
인에 대해서는 <u>1천만원에</u> 상	<u>2천만원에</u>

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	
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	
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